

## 법인기업정정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 변경·해지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사항을 변경登記한 다음, 변경된 법인登記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해야 한다.

※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개인기업의 휴·폐업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 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셔야 한다.